

제 293 회 임시회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
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청년예술청 사용료 면제 동의안」

제 안 설 명

문 화 본 부

의안번호 제1448호
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청년예술청 사용료 면제 동의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동의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 2호에 따라,
-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‘청년예술청’을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 전담 운영·관리함에 있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면제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은

- 서울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청년예술청 운영은 별도의 수익활동 없이 청년예술활동 지원 및 시설 유지·관리를 위한 사무로 이는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.

또한, 사용료 면제를 통해

- 사용료에 대한 문화본부 세입세출 예산 간 상계 반복 및 국세인 부가가치세 지출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올해 개관을 앞둔, 청년예술인의 공유 플랫폼인

청년예술청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청년예술청 사용료 면제

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,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